

(사)한국건축역사학회 회원 및 회비 관리규정

제정 2017. 3. 18

개정 2024. 3. 16

제1조 (회원 자격과 승인)

본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춘 개인이나 단체로서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(또는 이사회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정회원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가 준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.

1. 정회원 (정관 제7조 1항)

- ① 대학과 대학원의 건축계통 학과를 졸업한 자.
- ② 대학에서 건축계통 이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건축역사와 관련된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.
- ③ 건축역사에 관계되는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자, 또는 관심이 있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.

2. 준회원 (정관 제7조 2항)

- ① 대학과 전문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대학의 3, 4, 5학년 재학생
- ② 상임이사회가 준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

3. 명예회원 (정관 제7조 3항)

이사회에서는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 또는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내외국인을 명예 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, 이때 입회비 및 회비는 받지 않는다.

4. 특별회원 (정관 제7조 4항)

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(기업, 학술단체 포함)로서, 상임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나 그 단체

제2조 (회원 가입)

- ① 이 규정의 제1조에 정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회원(일반회원과 종신회원 가입은 선택사항)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- ② 명예회원의 추대는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.
- ③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(기업, 학술단체 포함)로서, 본회 이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.

제3조 (회원 자격의 변경)

준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어 회원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아래에 정한 신청서 및 회비를 내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는 본회에 <회원자격 변경신청서(별첨1)> 제출과 동시에 정회원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- ② 대학 재학시 준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대학(4년,5년제)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학회에 <회원자격 변경 신청서>를 제출해야 한다.
- ③ <회원자격변경신청서(별첨1)>는 본회 이메일(kaah@kaah.or.kr)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제4조 (회비 내역)

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에 대한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회원은 1년 단위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② 입회비와 연회비 등의 회비의 금액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- ③ 회원의 입회비, 연회비 등의 내역(2017년 3월 기준)은 다음과 같다.
 - 정회원
 - 입회비: 4만원 (최초 가입시 납부)
 - 연회비: 6만원 (1년)
 - 종신회비: 90만원 (15년 치 연회비)
 - 준회원
 - 입회비: 없음
 - 연회비: 3만원 (5만원: 논문회비 포함시)
 - * 준회원이 본회 논문집 '건축역사연구'를 받아 보려면 매년 2만원의 논문회비를 부담해야 한다. (정관 8조2항 규정 근거)
 - 특별회원 회비(1년)
 - 본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특별회원에게는 납부한 회비 전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한다. (특별회비는 최소 50만원 이상)
- ④ 본회가 시상한 <우수석사논문상> 및 <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발표상> 수상자에게는 1년간 연회비를 면제한다. (해당자는 사전에 학회 간사에게 연락하기 바람)

제5조 (회원의 권리와 혜택)

정회원과 준회원의 권리와 혜택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나 준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- ② 정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.
 - 본회 논문집 <건축역사연구>에 논문 및 자료 편 원고 투고, 게재
 - 본회 춘추계 학술대회에 논문 투고 및 발표
 - 본회 발행 간행물 원문서비스 이용
 - 본회 논문집 '건축역사연구' 배부(6회/년)
 - 본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
 - 본회 주관 행사(학술발표대회, 각종 세미나, 답사 등) 참가
 -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
 - 각종 증명서(회원 확인서, 논문투고 관련 증명서 등) 발급
 - 회원 경조사 알림 및 조문
- ③ 준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.
 - 본회 논문집 <건축역사연구>에 정회원과 함께 논문 및 자료 편 원고 투고, 게재
 - 본회 춘추계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투고 및 발표
 - 본회 발행 간행물 원문서비스 이용
 - 본회 논문집 '건축역사연구' 배포(단, 논문회비 추가 부담시)
 - 본회 주관 행사(학술발표대회, 각종 세미나, 답사 등) 참가

제6조 (회원의 탈퇴 및 자격정지 등)

회원의 탈퇴 및 자격 정지, 구제(救濟) 회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회원은 학회에 소정의 탈퇴서(별첨2)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, 본인 사망도 탈퇴로 본다.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소정의 '탈퇴서(별첨2)'를 작성하여 학회로 송부해야 한다.
- ②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, 회원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은 재적(在籍)회원으로 보

지 않는다. 단, 미납 회비를 납부할 경우 즉시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.(정관 제10조에 근거)

- ③ 본회 정관 제10조 2항에 의거 이사회의 결정으로 '군복무, 해외 유학 및 장기 체류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<휴식회원 신청서(별첨3)>을 제출하면 신청기간 동안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 단, 휴식기간에는 논문 제출, 의결권의 행사 등 회원의 권리 및 본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모두 중지된다. 단, 신청기간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.

제7조 (연회비 미납 시 권리 및 혜택 제한)

연회비를 미납한 정회원과 준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, 본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누릴 수 없다.

- ①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본회 논문집(건축역사연구)에 논문 등을 투고할 수 없고, 춘·추계 학술발표대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.
- ②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는 본회 논문집'건축역사연구'를 발송하지 않는다. 단, 미납 연회비를 완납할 경우 논문집을 발송한다.(단, 인쇄한 논문집의 여분이 없을 경우 해당 논문집의 PDF 파일을 제공한다)
- ③ 이 규정의 제8조에 근거하여 구제회비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에 따라 장기 미납한 연회비를 징수한다.

제8조 (구제 회비)

연회비를 장기간 미납한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구제(救濟) 회비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아래 1, 2, 3항의 규정은 구제 회비제도 운영 시에만 적용한다.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- ① 구제(救濟) 회비제도는 매년 연초(年初)에 운영하되, 금액과 시행기간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연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정회원과 준회원의 경우 3년치 연회비(당해 연도 연회비 포함)을 납부하면 미납 연회비 총액에 상관없이 완납한 것으로 본다.
- ③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정회원이 종신회비를 납부할 경우 미납 연회비 금액에 상관없이 종신회비를 납부하면 미납 연회비를 완납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 (기타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10조 (서식)
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아래와 같으며, 해당 회원은 첨부한 서식에 맞추어 문서를 작성하여 본회 이메일(kaah@kaah.or.kr)을 이용 제출한다.

<첨부 서식>

- 별첨 1. 회원 자격변경 신청서 (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변경 시)
- 별첨 2. 탈퇴서 서식
- 별첨 3. 휴식 회원 신청서 서식

회원 자격변경 신청서

성명:

회원번호:

생년월일:

준회원(구 학생회원) 가입일자: 년 월 일

회원자격 변경사유:

본인은 귀 학회의 준회원(구 학생회원)으로서 정회원으로 자격을 변경 신청하고자 하오니, 검토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 년 월 일

성명 _____ (서명)

*** 정회원 자격 조건(정관 제7조 제1항)**

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한 자로 한다.

- ① 대학과 대학원의 건축계통 학과를 졸업한 자.
- ② 대학에서 건축계통 이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건축역사와 관련된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.
- ③ 건축역사에 관계되는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자, 또는 관심이 있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.

(사)한국건축역사학회 귀하

별첨 2. 탈퇴서 서식

탈 퇴 서

성명: (서명 또는 날인)

연락처: Tel / e-Mail

회원번호:

생년월일:

탈퇴사유:

202 년 월 일

(사)한국건축역사학회 귀하

휴식(休息) 회원 신청서

본인은 한국건축역사학회 <회원 및 회비 관리규정> 제6조 4항(군복무, 해외 유학 및 장기 체류 시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회원은 휴식회원이라 하여 그 기간 동안의 회비를 면제한다.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식 회원을 신청합니다. (단, 휴식회원일 경우에는 학회지 발송 및 논문 제출 등 학회 정회원으로서 모든 자격이 중지됩니다.)

성명: (서명 또는 날인)

회원번호:

소속:

연락처:

기간:

사유:

202 년 월 일

(사)한국건축역사학회 귀하